



목 포 시

시 보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693호 2025. 5. 12. (월)

고시 · 공고

○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5. 12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민선8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 및 행정여건 변화 및 퇴직 등으로 신규 인원 충원을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**직급별** 정원 책정 기준 조정(별표2)

-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 조정
 - 연구관 7% 이내 → 17% 이내
 - 연구사 93% 이상 → 83% 이상

나. 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** 정원 조정(안 제4조, 별표 3)

(단위 : 명)

구 분		현행						조정					
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	1,374	1,374						1,374	1,374			
정무직		1	1					1	1				
일반직	소계	1,354	1,354						1,356	1,356			
	3급	1	1					1	1				
	4급	10	7	1	1	1		10	7	1	1	1	
	5급	71	34	3	3	8	23	70	33	3	3	8	23
	6급이하	1,272	1,272						1,275	1,275			
연구직	소계	16	16						14	14			
	연구관	1				1		2	1			1	
	연구사	15	15						12	12			
지도직	소계	3	3						3	3			
	지도관												
	지도사	3	3						3	3			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신.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05. 12. ~ 05. 14.(3일간)

9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4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9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 061-270-34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.0%이내	6.3%이내	21.4%이내	34.0%이내	27.0%이내	10.3%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 구 관	연 구 사	지 도 관	지 도 사
비 율	17% 이내	83% 이상	6% 이내	94% 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1,374	1,374				
정무직계	1	1				
정무직	1	1				
일반직계	1,356	1,356				
3급	1	1				
4급	10	7	1	1	1	
5급	70	33	3	3	8	23
6급이하	1,275	1,275				
연구직계	14	14				
연구관	2	1			1	
연구사	12	12				
지도직계	3	3				
지도관						
지도사	3	3				

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